

학교법인	교원인사규칙	문서번호	3-1-01(A)-0
		제정일자	10.03.08.
		최근개정	22.03.30.
		주관부서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홈페이지공개	공개

학교법인 웅지학원 법인사무국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웅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학교법인 웅지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재임용·정년보장·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 및 보수·복무를 말한다.  
② “승진”이라 함은 상위직명으로 재임용을 말한다.  
③ 임용은 계약서의 작성과 임용권자의 인사발령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5.07.17.>

**제4조의2(보수총량제)** <삭제 2022.03.30.>

**제5조(보수·복무·평가)** 교원의 보수·복무·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 제3장 임용

### 제1절 통칙

제7조(임용의 원칙) ① 교원의 임용은 교육 및 연구·봉사실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

③ 교원은 학과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할 경우 학과 소속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단, 임용대상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때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05.30., 2018.10.30.>

제9조(임용계약) ① 교원은 정관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 1. 근무기간

가. 교수: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5.07.17.>

2. 보수: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교육·연구실적·학생상담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승진·재임용·강임된 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05.30.>

④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05.30.>

제10조(임용의 제한) 퇴직교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은 이를 퇴직 전의 당해 직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용기간계산)** ①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계산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2.02.29.>

③ 휴직기간의 임용기간 산입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3 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0.10.28.>

④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임용일자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교원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가 변경된 때.
4.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 제2절 신규임용

**제13조(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조교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개정 2015.07.17.>
  2. 부교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해당과목 자격증소지자
  3. 교 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면서 해당과목 자격증소지자
- ② 교원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의 계산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참고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에 신규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재직 중인 교원이 제1항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5조(임용절차)**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임용 심사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한다.

**제16조(특별임용)** 다음 각 호의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전형(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1. 정관 제39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
2. 본 대학에 겸임 또는 초빙교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교원

**제17조(임용시기)**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1학기 초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및 특별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임용기간)**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사항)** 신규임용과 특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절 재임용

**제20조(재임용)**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임용기간)** ① 업적평가를 거쳐 재임용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매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9.12.05., 2022.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임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정년보장교수의 임용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

**제22조(재임용대상 및 기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재임용기준 점수는 백분위 연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교수는 계약제교원만 이에 해당된다. <개정 2010.10.28., 2016.12.30.2022.03.30.>

③ 직전학년도 업적평가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원은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2.17., 2016.12.30.>

④ 재임용 평가 점수는 직전학기를 제외한 해당 직명 임용기간의 교원업적평가점수로 한다. <개정 2018.05.30.>

**제23조(재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9월 1일에 실시한다. <개정 2016.08.11.>

#### **제24조(재임용절차)**

①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고된 기간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30.>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5조(정년자의 재임용기간)**

임용기간 만료 전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는 정년 시까지 재임용하며 임용장에는 정년 시까지 임용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년보장)**

- ① 제28조의 요건(승진최저요구기준)을 만족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의사회 의결을 통하여 임용한다. 단,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계약제로 임용된 자는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07., 2018.05.30., 2018.10.30.>
-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1.07., 2018.05.30.>
- ③ 정년보장교원이라 할지라도 매년 실시하는 업적평가의 대상이 된다.

**제4절 승진**

**제27조(승진 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년 9월 1일에 실시한다. <개정 2016.08.11.>

**제28조(승진 대상자 및 기준)**

- ① 직명별 임용 기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획득한 백분위 점수가 다음 표의 기준(이하 “승진최저요구기준”이라 한다) 이상인 자는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07., 2015.07.17., 2022.03.30.>

직명(직급)	자격기준	승진기준점수	최저승진소요연수
조교수→부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500점 이상	7년
	석사학위 소지자	570점 이상	8년
	석사학위 소지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500점 이상	7년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570점 이상	8년
부교수→정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600점 이상	8년
	석사학위 소지자	750점 이상	10년
	석사학위 소지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600점 이상	8년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750점 이상	10년

※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국한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만족한 대상자 중 승진심사 신청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단, 승진대상자가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일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05.30., 2018.10.30., 2022.03.30.>

③ <삭제 2022.03.30.>

④ 업적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승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승진임용 평가 점수는 직전학기를 제외한 해당 직명 임용기간 교원업적평가점수로 한다. <신설 2016.08.11.>

#### 제29조(승진의 제한)

① 교원이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을 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이 있는 교원은 다음의 업적평가 점수를 승진점수에 반영하지 못한다.

1. 정직 : 당해 연도 업적평가점수와 다음 연도 업적평가점수

2. 감봉 : 당해 연도 업적평가점수와 다음 연도 업적평가점수의 1/2

3. 견책 : 당해 연도 업적평가점수

③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및 그 직후의 학기에는 승진하지 못한다.

④ 대학의 실정에 맞추어 교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내 분규를 조성하는 등 해교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교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30조(특별승진) ① 제33조에 해당하고 신규임용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외국인 교원 채용

제31조(외국인 교수의 범위) 교육기관에서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학의 학생수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외국인 교수 채용) ① 담당과목이나 강의내용 등을 볼 때 국내인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국내인보다 교육 효과가 현저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 “19호: 교수(E-1), 20호: 회화지도(E-2)”로 입국자격을 가진 자.

③ 체류기간이 정관에 정한 임용기간보다 길거나 정관의 임용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자격기준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전임교원으로, 교수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대학 졸업 후 E-2를 취득한 경우 외국어담당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5장 표창 및 세칙

제33조(표창)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창의적 제안으로 예산절감, 교육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34조(표창의 시기 및 절차) 표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 대학 개교기념일에 행하며,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 또는 총장이 행한다.

제35조(표창수상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특별 상여금 지급
2. 특별 휴가
3. 특별 승진
4. 기타

제36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 2010.03.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모든 교원은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새로 재임용 계약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산출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기간의 매년 업적평가 점수는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균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2009년에 신규 임용된 조교수는 제28조(승진대상자 및 기준)의 전임강사로 본다. 따라서 2009년에 신규 임용된 조교수 임용기간의 평가점수가 제28조의 전임강사의 기준을 만족해야 본 규정의 조교수로 승진재임용 대상자가 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임용된 자로서 제4호의 표에 의한 직명별 최저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은 이 규정 제22조에 불구하고 임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재임용 대상자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임용된 자로서 제4호의 표에 의한 직명별 최저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교원은 이 규정 제28조 제1항에 불구하고 최저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때에 승진대상자로 본다.

③ 2007학년도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한 학기 휴직한 교원은 휴직기간은 임용 기간과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4호에 의한 최저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승진대상자로 본다. 단,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2.5년을 초과해야 승진대상자가 된다.

④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임용자 최저승진소요연수

직명별	소요연수	비고
전임강사 → 조교수	2년	
조교수 → 부교수	4년	
부교수 → 정교수	5년	

⑤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임용자별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구분	임용일자	임용직명	계약기간만료일	비고
승진	2009. 04. 01.	부교수	2011. 03. 31.	
	2009. 10. 01.	부교수	2011. 09. 30.	
	2009. 04. 01.	조교수	2011. 03. 30.	
	2009. 10. 01.	조교수	2012. 09. 30.	
재임용	2010. 03. 01.	조교수	2013. 02. 28.	
신규 임용	2008. 07. 01.	전임강사	2010. 09. 30.	
	2008. 09. 01.	전임강사	2010. 09. 30.	

⑥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산출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기간의 매년 업적평가 점수는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균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2009년에 신규 임용된 조교수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예정으로 전임강사명칭이 조교수로 바뀔 것을 예상한 전임강사대우 조교수를 의미함으로 전임강사로 재임용한다. 따라서 2009년에 신규 임용된 조교수 임용기간의 평가점수가 제28조의 전임강사의 기준을 만족해야 본 규정의 조교수로 승진재임용 대상자가 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11.09.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에 불구하고 전체 교원에게 신규정이 적용되는 2013학년도부터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매년 평가한 백분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상대평가 상위 97%미만의 경우 합계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3월 8일 이전 재임용되거나 2010년 3월 8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 3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5판-개정/시행 2014.11.07.>

이 규정은 2014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판-개정/시행 2015.07.17.>

이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판-개정/시행 2015.11.18.>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판-개정 2016.02.17.> <시행 2016.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시행 후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신규 임용·재임용·승진임용)

부 칙 <9판-개정/시행 2016.08.11.>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판-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판-개정/시행 2018.0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9조제3항,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2018년 0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2판-개정/시행 2018.10.30.>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판-개정 2019.01.22.> <시행 2019.03.01.>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판-개정/시행 2019.12.0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판 개정/시행 2021. 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규정(2020. 10.31 폐지)에 따른 책임시수 미달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예외

인정) 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한 교원 중 책임시수 미달로 교원업적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자는 제22조(재임용대상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②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한 교원 중 책임시수 미달로 교원업적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승진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는 제28조(승진대상자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저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16판 개정/시행 2022. 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